

# 한국체육대학교 장학금 규정

제정 2015. 2. 3. 규칙 제662호  
개정 2016.11.11. 규정 제720호  
개정 2020.11.23. 규정 제828호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「학칙」 제84조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②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각 장학단체 또는 장학금 기탁자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

**제3조(구분)**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교내장학금 : 등록금 재원의 장학금
2. 교외장학금 : 국가기관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
3. 국가지원 장학금 : 한국장학재단, 국책사업 등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

## 제2장 장학위원회

**제4조(구성)**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훈련학생처장 및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20.11.23.>

③ 위원장은 훈련학생처장이 되고, 간사는 학생팀장이 된다. <개정 2020.11.23.>

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훈련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1.23.>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·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관련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장학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
3. 장학 관련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3장 장학생

**제6조(자격)**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
2. 경기력이 우수한 학생
3.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
4. 교내활동(근로, 자치활동, 체육활동 등)에 공로가 있는 학생
5. 수혜조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학생
6.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

**제7조(자격제한)** 장학금 신청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거나 평점평균 2.5점 미만인 학생
2.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
3. 직전학기에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학생

**제8조(선정절차)** ① 장학생 선발은 학과장이 장학금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및 장학생 추천서(별지 제2호서식)를 작성하여 학장이 확인한 후 훈련학생처에 제출한다. <개정 2020.11.23.>

② 체육학과의 경기력우수 장학생 선발은 각 부 지도교수가 경기력을 근거로 경기력 실적순위표(별지 제3호서식)를 작성하여 학과장은 경유, 스포츠과학대학장이 확인한 후 훈련학생처에 제출한다. <개정 2020.11.23.>

**제9조(장학생 의무)**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업에 정진하고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며 모범이 되어야 한다.

## 제4장 장학금

**제10조(수혜기간)**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수혜기간이 지정된 장학금과 별도의 규정이 있는 장학금은 그에 따른다.

**제11조(장학금액)** 장학금 지급금액은 장학금 재원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12조(장학금 지급 중지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1.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
2. 휴학을 한 학생
3. 수혜정지 처분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학생
4.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학생

## 제5장 등록금감면 장학금

**제13조(당연면제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.

1. 국가유공자 자녀(직전학기 70점이상)
2. 북한이탈주민 자녀(직전학기 70점이상)

**제14조(면제 또는 감액)**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다.

1. 현 국가대표선수
2. 현 상비군
3. 현 주니어대표 및 꿈나무 대표

4. 전 국가대표 및 전 상비군
5. 경기력이 우수한 자로서 소속부 지도교수가 특별히 추천한 자
6.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소속 학과장이 추천한 자  
 ② 등록금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15조(징계처분자의 장학금 지급제한)**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징계처분이 종료된 학기 이후 다음기간 중에는 등록금감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.

1. 균 신 : 1학기간
2. 유기정학 : 2학기간
3. 무기정학 : 3학기간

**제16조(대상자 및 인원수의 결정)** ① 매학기 등록금감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인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.

- ② 제14조 당연면제 대상자는 정수율 기준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6장 기타

**제17조(세부시행 사항)** 기타 장학금의 종류, 이중수혜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(제662호, 2015. 2. 3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종전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규정(규칙 제586호) 및 한국체육대학교 기성회비 면제감액에 관한규정(제596호)에 의거 시행한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폐지규정)**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「한국체육대학교 기성회비 면제감액에 관한 규정」은 폐지한다.

#### 부 칙(제720호, 2016. 11. 1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제828호, 2020. 11. 23.) (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한국체육대학교 장학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교학처장”을 “교무처장”으로, “훈련처장”은 “훈련학생처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훈련처장”은 “훈련학생처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훈련처장”은 “훈련학생처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교학처”는 “훈련학생처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훈련처장”은 “학과장”으로 “훈련처”는 “훈련학생처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교학처장”을 “훈련학생처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훈련처장”은 “학과장”으로 “훈련처장”을 “스포츠과학대학장”으로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장학금 신청서

### 1. 대상자 인적사항

20 학년도	제 학기	장학명	
학부(과)명		학 년	
학 번		성 명	(인)
연 락 처 (휴대전화)		학점	
		평점	
통장번호	계좌번호 : 은 행 명 :	예금주 :	

### 2. 내용 [활동내용 또는 학과장 추천내용 기술]

### 3. 붙임서류(해당자)

가. 통장사본 1부.

나. 성적증명서 1부.

위와 같이 20 년도 제 학기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.

20 . . .

추천자

학과장

(인)

확인자

학장

(인)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0.11.23.>

## 장 학 生 추 천 서

### ■ 학과명 :

순위	구 분	학년	학 번	성 명	계좌번호		성적 (직전학기)	추천사유
					은행	계좌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11								
12								
13								

상기 학생을 20 학년도 제 학기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.

첨부 :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

20 . . .

추천자	학과장	(인)
확인자	학장	(인)

**훈련학생처장 귀하**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0.11.23.>

### 체육학과 경기실적 순위표

#### 부명 :

\* 전체학생 순위를 표기

순위	학년	학번	성명	대회명	기간	성적	비고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10							
11							
12							
13							
14							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작 성 자 :      부      지도교수 :      (서명)

확인자 : 학과장      성명 :      (서명)

확인자 : 스포츠과학대학장      성명 :      (서명)

#### ※ 작성방법

- 【경기력순위설적표】 각 종목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지도교수가 직전학기 대회비중도 및 성적순위에 의거 경기력실적순위표를 작성 후 스포츠과학대학장이 확인한다.  
현 국가대표 → 현 상비군 → 현 주니어대표 및 꿈나무 대표 → 전 국가대표 및 전 상비군 → 기타 경기력 우수자
- 【장학생 신청자격 제한】 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및 평점평균 2.5미만 인자
  - 재입학자, 졸업예정자, 학기초과자, 졸업탈락자(총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작성)
  -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자
- 【비고】란에 경기력우수, 당연면제자(국가보훈자, 세터민)로 기재